

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강령

호텔롯데(이하 '회사'라 한다)는 구성원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정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

1. 정의

-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직장 내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성적 언동 및 그러한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,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,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,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본 규정은 회사 임직원과 파견사원,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(이하 "직원"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회사의 책무

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4. 대응 조직

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사건의 접수, 조사, 처리를 담당하게 한다.

회사는 신고방법 및 신고처(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)를 상시 게시하여 피해자가 비밀을 보장받으며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.

5.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

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다

-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-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-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-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-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-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-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및 언어적, 정신적,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그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을 이유로 업무평가, 고용,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
- 성별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-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여러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
6. 처리절차

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
- 사건의 신고 접수
- 사건 내용 확인
- 조사와 상담 실시
- 조사 완료
-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, 피해자 보호조치
- 결과 통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<부칙>

제 1조(시행시기)

1. 본 강령은 2022년 --월 --일 제정되었으며, 2022년 --월 --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소급적용금지)

1. 본 방침의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 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.